

1930년대 소련 국가권력의 위기와 한인 강제이주

沈 憲 用 著*
林 彩 二 譯**

1. 머리말
2. 국가관리 수단으로서 강제이주와 그 발생 유형
3. 소련 국가권력의 위기와 정치갈등 구조
4. 한인 강제이주 결정과 실행
5. 마무리

1. 머리말

1937년 소비에트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18만여 명의 한인이 집단적으로

* 정치학 박사,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문학 박사, 모스크바 대학교

이 글은 1999년 러시아 학술원 민족학연구소 학술기관지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민족학 연구)』에 발표되었던 글("К изучению причин депорт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소비에트 한인 강제이주의 원인 연구)")을 번역하여 특집 주제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주된 사실은 소련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언론과 지식인 사이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소련의 반체제 인사들 역시 한인에 대한 집단추방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알렉산드르 솔제니친만은 그의 저서 『수용소 군도(Архипелаг ГУЛАГ)』(1937-76, 파리)를 통해 스탈린 체제의 기원과 수용소 제도의 실상을 비판하면서 한인이주의 참혹함을 전하였다. 그는 체제비판의 서적을 외국에서 출간한 이유로 1973년 2월 국외추방 당하였다.

“1937년에 수만명의 의심스러운 한인들이 - 일본 제국주의와 마주친 상태에서 누가 그 쩌진 눈을 한 외래인들을 신뢰하겠는가? - 중풍에 걸린 노인에서부터 훌쩍거리는 아기까지 얼마 안되는 소유물을 가지고 극동에서부터 카자흐스탄으로 신속하고도 조용하게 옮겨졌다. 어찌나 신속하였던지 그들은 첫겨울을 창문도 없는(그 많은 우리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진흙벽돌 집에서 보냈으며 어찌나 조용했는지 이웃한 카자흐인 이 외에는 아무도 이들의 정착을 알지 못했으며 외국특파원들도 짝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¹⁾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18만여 명의 주민이 하루아침 사이에 사라져 버렸는데도 이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와 평화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단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일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한인을 자국의 신민으로 여기면서, 주소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인을 다시 귀환시키라고²⁾ 몇마디 항의한

1) Alexander I. Solzhenitsyn, The Gulag Archipelago(Архипелаг ГУЛАГ), 1918-1956. An Experiment in Literary Investigation? Vol V-VII. tr. Harry Willet (New York : Harper and Row, 1978), pp. 386-387 ; 키무라 히데수케(木村 英亮),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한인”, 서대숙 편, 『소비에트한인 백년사』, (서울 : 태암, 1989), p. 118. (재인용)

2) 1937년 11월 일본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한인을 집단이주시킨 것에 항의하고 다시 귀환시키라는 항의 각서를 보냈다. 소련은 국적법이 상충할 때 속지주의에 따르는 것이 국제관례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일축하였다. 조선의 동아일보도 조선애국단체가 소련의 한인강제이주에 대해 항의하고 소련과 미국에 보낼 항의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기사화했으나 일반 여론은 그리 높지 않았다. ABPI РФ(러시아연방 외무성 대외정책문서보관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말마적인 항의 그 이상도 아니었다. 일본으로서는 스탈린 정부가 집단이주를 결정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한인 스파이’와 그들이 활동할 ‘제5열 지대’, 즉 한인공동체를 연해주에서 상실했는지는 몰라도, 반대로 그 곳을 배경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한인빨치산의 존재 그 자체가 동시에 없어졌다는데 반색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간 이해타산은 냉혹한 것이다. 극동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킨 국가없는 소수민족 한인에 대한 집단적 강제이주 사건이란 국가간 이해관철의 수단이 될지언정 목표가 될 수는 없었다.

강제이주라는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증언³⁾과 사료⁴⁾가

소). Ф. Референтура по Корее. Оп. 21. Папка 186, Пор. 17. ЛЛ. 1-13.

- 3) Г. А. Югай,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своего поколения (소련사람 : 자기 세대의 사회심리학적 초상), Ташкент, 1990 ; Б. Ким(김브루트), Ветры наших судах :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우리는 누구인가. - 소련의 한인들 125년사), Ташкент, 1991 ; Б. Пак(박보리스), Потомки страны белых аистов (Краткая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하얀 황새의 후예들. 소련한인 소사), 1990 ; П. Г. Ким, Кореяны в Узбекистане, Ташкент, Сеул, 김 뵈트르 게르노비치, 방상현, 『재소 한인이민사 : 스탈린의 강제이주』, (탐구당, 1994).
- 4) 한인 강제이주를 최초로 사료적 전거, 즉 1937년 8월 27일 소련 인민위원회와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극동지역 국경지구에서 한인이주민 강제이주”란 명령서를 폭로한 이는 부가이었다. 그는 정부의 강제이주 민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정책을 준비하면서 원사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Н. Ф. Бугай, “К вопросу депортации народов СССР в 30-40-е годы(1930-40년대 소련 민족 강제이주문제)”, История СССР, No. 6, 1989, с. 135-144. ; Н. Ф. Бугай, “Погружены в эшелоны и отправлены к местам поселений ... (열차에 태워졌고 이주지로 보내졌다. ...)”, История СССР, No. 3, М., 1991 ; Н. Ф. Бугай, “Депортация корейцев в 1937 году(1937년 한인강제이주)”,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No. 6, М., 1992 ; Н. Ф. Бугай (ред.), Иосиф Сталин - Лаврентий Берия : “Их надо депортировать ... (요시프 스탈린이 라브렌치 베리야에게 : 그들을 강제이주시킬 필요가 있다. ...)”, М., 1992 ; Николай Бугай и Харуки Вада, “Из истории депортации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러시아한인 강제이주사에서)”, Дружба Народов, No. 4, 1992 ; 부가이, 『재소 한인들의 수난사 - 해설 및 관계 공문서-』 (성남 : 세종연구소, 1996) ; В. Ким(김 블라지미르), Правда полвека спустя. 김현택 역 『러시아 한인 강제이주사. 문서로 본 반세기 후의 진실』 (서울 : 경당, 2000) ; Н. Ф. Бугай, Корейцы в Союзе ССР - России : XX-й век, М. Ж ИНСАН, 2004.

드러나 그 역사적 실체로 상당부분 깊게 접근해 왔다. 문서보관소의 1차사료가 대공개됨으로써 소수민족 한인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는 한단계 끌어올려졌다. 그동안 묻혀지거나 잊혀져버린 한인 이주정착사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 즉 러시아 당국의 민족정책, 이민 및 강제이주의 성격과 분류,⁵⁾ 민족자치주 구성 여부⁶⁾ 등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재정립되었다.

본고는 사안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한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 강제이주가 지닌 성격과 발생 동기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강제이주라는 억압조치가 취한 스탈린 체제의 성격과 국내의 조건 그리고 정치세력 간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집단적 한인 이주가 진행된 전개과정을 사료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5) Л. Л. Рыбаковский, Населен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а 150 лет(극동지역 주민 150년사), М. : Наука, 1990 ; 심현용, “강제이주의 발생 메카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 연구 : 소련 강제이주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집』, 한국국제정치학회, 제39집 3호, 1999 ; Сим Хон Ёнг, “Депортация народов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спект проблемы” (재민족의 강제이주 : 문제의 국제적 측면) - 국제컨퍼런스발표자료집, Россия в XX веке : проблемы 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20세기의 러시아 : 민족관계의 제 문제), (М. : Наука, 1999), с. 377-384 ; 심현용, “조선인의 러시아 이민사 - 이민 초기의 쟁점과 현대적 의미”, 서대숙 편, 『한국과 러시아 관계 :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 6) С. Нам,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рай он.(한인민족지구) Пути поиска исследователя, М. : Наука, 1991 ; Н. Ф. Бугай, “Досье «Востока». Корейцы в СССР : из истории вопрос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소련에서의 한인. 민족국가에 대한 문제의 역사에서)”, Восток, No. 2, М., 1993 ; 이종훈,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연해주 재이주가 갖는 정치, 경제적 의미”, 『재외한인연구』 제7호, 1998, 재외한인학회, pp. 121-130 ; 심현용, “극동연해주에서의 러시아한인 민족자치주 : 역사적 사실 및 전망”, 『한국시베리아 학보』 창간호, 1999, 가을호, pp. 65-105 ; 고찬, “러시아 한인의 연해주 자치주 설립 가능성과 당위성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사논문, 2000 ; 보리스박, 니콜라이 부가이, 러시아에서의 140년간(140 лет в России), (서울 : 시대정신, 2004) ; Н. Ф. Бугай, Сим Хон Ёнг,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Конститутивность, эволюция, признание(러시아 고려인 사회단체. 기원, 과정, 성과) (М.-Сеул, Новый хронограф, 2004).

2. 국가관리 수단으로서 강제이주와 그 발생 유형

(1) 국가관리 수단

강제이주(deportation, депортация)란 “그 어느 개인이나 집단 혹은 민족 전체를 직, 간접적인 탄압에 따라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강압적으로 이주시키는”, ‘추방’, 내지 ‘유형’을 뜻한다.⁷⁾ 즉 강제이주란 어느 한 사회 지배집단의 권력이 그 사회에 동화(assimilation) 내지 통합(integration)되지 못한 피지배집단에 대해서 취하는 억압조치로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고향을 빼앗는 것”이다.⁸⁾

여기서 강제이주란 어느 개인이나 집단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나 조치로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사회 내부집단 간에 발생하는 불안정한 긴장관계를 사회관리 메카니즘의 틀내에서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의 지배권력은 강제이주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그에 따른 조치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으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정책결정 사안이 타국과의 전쟁이나 전쟁 발발 직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지배권력 집단이 더욱 쉽게 극단적 조치에 호소하기도 한다. 특히 그 집단이 적성국의 민족 디아스포라(diaspora)인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한 퇴거 결정은 더욱 신속하고도 억압적으로 처리되어 왔다. 공통적인 것은 강제이주 조치를 취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높은 정책적 결과를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동기가 일치하였다.

국가의 갈등 조정 역할은 다민족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다. 비록 개념적으

로 구축된 정책방향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다양한 주민구성이나 정책 시행과정의 합리성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된다. 국가의 위기관리는 다양한 측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국가조정 메카니즘으로 완성된다.⁹⁾ 특히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강제이주와 같은 억압조치를 선택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은 꼭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결론되어 지지도 않는다. 역사는 국가권력이 사안을 해결하려는 동기나 수단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관리 방식 등에 있어서 항상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로 인해 취해진 결과는 그 부정적 속성으로 인해 단죄되어 왔다.

국가 관리 메카니즘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조건이 차단된 상황 속에서 취해진 통치행위는 결국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것이므로 정치적,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평가라도 있어야 국가와 주민간 그리고 주민 집단간 형성된 피해의식과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기억에서 걷어내고 역사적으로 단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강제이주 발생원인별 분류

강제이주는 도덕적 결함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 성격의 국가권력에 의해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객관적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강제이란 정책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과 동기 등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적 선택을 저버리게 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그 분류조차 그리 명쾌하진 않았다. 이 점에서 다음의 네가지는 활발한 논의 전개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7) Этнос, Нация, Общество. Этн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인종(ethnos), 민족, 사회, 인종학사전). (М. : Витган, 1996), с. 40.

8) Ibid.

9) О. В. Шампу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 проблема выбора средств”.(국가의 민족관계 조정 : 수단 선택의 문제) Межрасовые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в Европе и Америке XIX-XX вв. (19-20세기 유럽과 미국의 인종, 민족관계) (М. : Ин-т все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РАН, 1996), с. 14-15.

사항으로 판단된다.

강제이주와 같은 억압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은 ① 점령지에 대한 통제력 강화, ② 전쟁 혹은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 ③ 종족, 집단간의 긴장이나 갈등 해소, ④ 종교적 믿음의 차이로서의 갈등 등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⁰⁾ 첫 번째 이유는 영토를 둘러싼 논란이 이해 당사자 간의 긴장상태로 발전하여 발생한다. 이같은 상황은 어느 한 국가가 타국의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교전 중이거나 승전 이후 점령한 영토에 자국의 주민을 정주시켜 획득한 영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 속에서 발생된다.

두 번째 이유로는 전쟁에 대한 위협과 전쟁 수행 중에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발생된다. 이 경우 강제이주된 주민 집단은(예상되는) 적성국과의 접촉 내지 내통에 따라 '불온함'이란 낙인이 찍혀(예상되는) 국경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희생되어 자신들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쫓겨났다. 전쟁에 대비한 국가의 지도자는 국경을 중심으로 조성된 사회 내의 긴장상태와 사회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일국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던 스탈린의 억압통치 시기, 특히 전쟁의 전야에 추진된 강제이주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서 소련의 서부에서 시작해 남부를 거쳐 동부에 이르기까지 소련 국경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좀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취해졌다 하더라도 자국내에 적국의 '제5열 지대'가 존재한다는 혐의를 제기한다. 이 역시 그 목적에 있어서는 역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억압조치가 입안, 추진되었다.¹¹⁾ 즉 이미 어느 민족에 대한 불신과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진전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유로는 여러 종족 집단들 사이에 조성된 경제적 불평등 상태와 이를 개선코자 하는 집단의 권리주장과 이로 인해 조성된 사회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 상층부는 자칫 강제이주를 채택할 수 있다. 이때 권력집단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혹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 어느 해결방식을 선택하는가의 방법론이 아니라 그 결과 즉 안정 추구에 있었다.

1920년대 후반 소련 농업집산화 정책이 극동 연해주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무토지 주민집단 내지 민족집단의 요구에 대응하여 집단적인 이주라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연해주 지방정부는 토지 재분배를 둘러싼 꿀락(부농)과 빈농, 토착민과 이주민 간에 조성된 긴장관계를 위도 48. 5도 북방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내었다. 이 방안은 1928년 노동국방위원회가 채택하여 2년후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때 블라디보스톡 주의 한인 1만명이 하바로프스크 북부 꾸르다르긴과 썬진 구역의 습지대로 집단이주되었다.¹²⁾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결과 소련 지방정부는 블라디보스톡 지역의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하바로프스크의 처녀지를 개간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

네번째로 강제이주가 실시되는 동기로는 종교적 믿음의 차이에 따라 발생된 첨예한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까지 발전하게 된 경우이다. 유태인과 팔레스타인 민족의 숙명적인 갈등은 종교문제를 통하여 더욱 심화되었고 무슬림 세력과 기독교 세력간의 갈등과 경쟁의식은, 심지어 '문명충돌'이라는

10) Сим Хан Ёнг, *Корейский этнос в систем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СССР*(소련 민족관계 체계 속의 한민족(ethnos)), ДКП, 1998, с. 129-130 ; 심현용, "강제이주의 발생 메카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1999, pp. 203.

11) В. С. Измозик, "Политический контроль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1918-1928 годы)"(소비에트 러시아(1918-1928년)의 정치통제),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역사의 제문제), N. 7, 1997, с. 42. 러시아 독일인의 경우 이미 1920년대부터 독일의 '제5열'이 될 수 있다는 혐의를 소련으로부터 받고 있었다. KGB의 전신인 당시 합동국가보안부(ОГПУ)는 위원장 체르진스키(Ф. Джерзинский)에게 "소련에서의 독일인"이라는 보고서를 보냈는데 "독일 이주민들이 독일의

반소정책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독일 정착민들을 해산시키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민족적, 종교적 반목을 이용하여 정착지를 해체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12) ЦГА ДВ(극동중앙국립고문서보관소), Ф. Р-2413. Оп. 2. Д. 309. Л. 235 ; Текущий архив Миннаца России(러시아민족부 최신고문서보관소), Комплекс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российскихских корейцев (федератив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러시아한인 민족문화부흥국가종합계획서(연방전략프로그램)). (M.: рукопись, 1994), с. 47.

전방위적 대립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¹³⁾ 종교적 징표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사회의 행위자간의 대립 뿐만 아니라 일국 내에서도 발생된다. 여러 종파에 속한 신앙인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적 복무사항에 대해 거부 행동을 취함으로써 제재 내지 탄압을 받게 되기도 한다.

(3) 소련 강제이주의 유형별 분류

강제이주가 발생할 수 있는 동기를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우리는 강제이주가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과 그에 따른 정책적 선택이 맞물리면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그 국가의 사회관리 메카니즘이 비합리적, 비민주적 성격을 지녔다면 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소련에서 발생한 여러 강제이주 사례를 보면 앞서 언급한 원인들, 그 중에서도 전쟁 혹은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거나 종족, 집단간 긴장이나 갈등해소라는 두 측면이 중첩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에서 강제이주와 같은 억압조치가 문제해결을 위한 전유물(prerogative)로 취해진 것은 아니지만, 애석하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빈번하고도 규모가 크게 실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소비에트 국가권력의 폭력성은 매우 컸다고 하겠다. 수치상으로 보아도 1930-40년대 소련에서 발생한 집단적 강제이주 조치는 60여 민족에게 해당되었으며 그 중 15개 민족은 민족구성원 전체가 고통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주대상이 된 전체 주민수만 해도 350만에 이른다.¹⁴⁾

소비에트 사회에서 발생한 강제이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특성별로 분류해 볼 수도 있다. 전쟁에 임박한 긴장의 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일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스탈린 정부가 선택한 조치는 적성국 소속 민족이건 아니건 적성국에 부역했거나 정보를 제공한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그들이 속한 민족적 징표와는 상관없이 적용되었다. 즉 어느 민족을 말살하거나 인종청소를 자행하려 선택했다기 보다는 국가안보와 정권 유지가 더욱 큰 동기가 되었다. 따라서 민족이나 주민의 안전은 종속변수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러한 점에서 강제라도 이주되어 간첩이라는 의심이나 감시, 더 나아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오히려 다행이 아니냐는 자조섞인 의견도 나오는 듯하다.

또한 소련에서 발생한 강제이주는 민족지위별 유형으로 지배(주도, 명의) 민족과 피지배(비주도, 비명의) 민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결과 후자만이 집단이주의 대상이 되었다던지 혹은 소수민족만이 대상이 되었다던지 하는 분류는 옳바르지 못하다. 350만에 이르는 강제이주 대상 주민의 민족 구성을 보면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만이 아니라 명의 민족인 슬라브계 민족 그 모두가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강제이주를 당한 민족 집단들을 그들의 거주역사나 거주방식 유형에 따라 러시아연방에서 전통적으로 거주해 오던 토착민족과 러시아연방으로 이주해온 도래민족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다.¹⁵⁾ 토착민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민족, 즉 체첸인, 잉구쉬인, 발카르인, 까라차이인, 아디게이인, 체르케스인, 칼미끼인, 크림따타르인들이다. 이들은 강제이주를 당함으로써 비로소 유랑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심지어 이들은 소비에트 정권하에서 획득하고 있었던 민족국가마저 상실당하는 비명의 민족이 되었다. 이에 비해 도래민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인, 독일인, 폴란드인, 꾸르드인, 터키-메스헨인, 그리스인, 이란인, 불가르인 등은 러시아 영역 이외의 지역에 자신들의 민족적 고향을 갖고 있으나 여러 요인에 따라 러시아에 유입되어 살고 있는

13) S.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서울 : 김영사, 1997).

14) Д. А. Волжогонов, "Триумф и трагедия. Полит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И. В. Сталина"(승리와 비극. 스탈린의 정치적 초상), Октябрь(10월), N 2. 1988, с. 129.

15) 심현용, "강제이주의 발생 메카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pp. 213-214.

민족들이다. 이들은 대개가 국경지대에 거주함에 따라 30-40년대 강제이주 등의 여러 억압 조치를 받아 고통을 당한 케이스이다. 유랑민으로서의 이들 도래민족이 지닌 역사적 운명은, 일시적이거나 소비에트국가 건설기의 초기에 자신들의 정착지를 건설하여 새로운 고향으로 알고 지냈지만 곧바로 또 다른 유랑의 길로 떠나게 되었다. 이들은 몇 세대에 걸쳐 거주하고 있었던 정착지에서조차 멀리 떨어져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들 도래민족 중에서 러시아, 독일인은 유일하게 불가강 유역에 자치공화국을 건설하였지만 그나마 그것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하물며 정치적 자치권마저 보장받지 못했던 한인과 같은 여타 소수민족이 쉽게 강압정치 희생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지위가 얼마나 허약했던 것인가를 보여 준다. 그나마 강제이주된 대상은 도래민족 만이 아닌 토착민족과 슬라브계 대민족 역시 예외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안이 될 뿐이다.

다음으로는 국가의 대외안정을 회구하여 국경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추진된 강제이주조치는 선택의 동기에 따라 사전 예방적 조치였는지 아니면 사후 처벌적 조치였는지로 조치 유형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예상되는 적성국에 대한 협조일 경우, 그에 대한 대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미 교전 중인 적국에 협조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로 집단적 강제이주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36년 독일과의 갈등을 고려해 서부 국경지역인 핀란드 접경지역에서 잉게르만란츠인이 내륙으로 이주되는 것부터 시작해 그리고 4월에는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 지역에서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백러시아인 주민들이 국경 800m 밖으로 내몰렸으며 그 이듬해 1937년 7월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타지크스탄 공화국에 특별금지지가 공식적으로 설정되어 꾸르드 민족 등 갈등이 예상되는 민족을 내륙으로 이주시켰다. 이같은 사례는 소련정부가 국경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쟁이 터지기 이전에 예방 차원의 수단으로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이다. 이런 조치는 동부 극동지대로 옮겨가 1937년 8월 한인에 대한 집단

적 강제이주로 이어졌다.

전쟁이 터지자 처벌적 성격을 지닌 집단적 강제이주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사례는 적군의 점령지역, 특히 히틀러가 침공한 북카프카즈 지역에서 부역에 가담한 집단에 대하여 강압적 조치가 취해졌다. 이 지역은 러시아 중앙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소비에트 국가 건설기 민족국가 형성, 경제, 문화정책 수행 중 명령하달식 정책 추진에 따라 반감이 깊게 내재된 곳이었다. 전쟁이 터지고 점령군이 장악하자 어쩔 수 없이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부역에 종사했지만, 일부에서는 반소비에트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부역 종사자나 반소비에트 운동에 가담한 빨치산 등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부는 소수민족이 유지하고 있었던 정치적 자결체인 자치공화국마저 폐지하거나 인근 주로 편입시켰다.¹⁶⁾

그런데 “적군을 적극 돕는(активно помогал неприятелю)”자들을 벌하기 위한 행위 내지는 제국주의 전쟁에 대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는 국가이익이란 미명 하에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취할 수도 있다. 국가이익을 강화하고 옹호한다는 입장 속에서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집단의 안위를 우선 순위에서 팽개치는 순간 그 결정은 음모를 시행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근거가 될 구체적인 자료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비에트 한인을 극동지역에서 강제 이주시킨 근원에는 소·일간의 암묵적인 인정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도 추정할 수 있다.¹⁷⁾ 당시 스

16) A. M. Nekrich, *The Punished Peoples : the Deportation and Fate of Soviet Minorities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 Mortom, 1978), p. 99 : “Депортация. Берия доказывает Сталину”(강제이주. 베리아가 스탈린에게 보고함) *Коммунист*(공산주의자). N. 3. (M.: 1991), с. 101-102.

17) M. H. Пак, “О причинах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депорт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소비에트 한인을 강압적으로 이주시킨 이유에 대해서)”, *Дорогой горьких испытаний к 60-летию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M. : Екслибрис-Пресс, 1997), с. 31.

탈린의 대일 외교정책의 기초는 일본과의 유화정책에 있었다. 이미 중동철도를 일본에 매각한 소련은 1937년 7월 일본이 조장한 노구교사건을 빌미로 중국의 만주를 침략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무력충돌을 우려해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일본은 소련이 물러난 만주지역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침략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소련이 일본과 비밀 불가침 협정을 맺던 바로 그 날 8월 21일 한인을 집단이주시키기로 서명한 아이러니가 이루어졌다. 강대국 간의 이해타산 속에 소수민족 한인의 안위는 전혀 관심대상이 아니었다.¹⁸⁾

3. 소련 국가권력의 위기와 정치갈등 구조

(1) 국가권력 위기의 대내외 조건

1930년대 중반 스탈린 체제는 매우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1936년 12월 소련정부는 소위 '스탈린 헌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의 안정과 인민의 복리가 보장되는 소련에서의 사회주의가 승리했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은 그 동안 농업집산화와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만연된 엄격한 국가 통제와 관리 그리고 억압과 테러를 전제로 한 모순을 내포한 것이다.

정치적 폭력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양립한다는 모순은 어

18) 1937년 한인 강제이주에 대한 국제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측 자료가 매우 중요하나 이상하게도 이 사건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서류철이 일본 외무성 문서보관소에서 실종되었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와다 하루키(和田 春樹), 『소비에트 극동의 조선인들 1917-1939』, 서대숙 편, 『소비에트한인 백년사』, p. 71. 당시 일본 외무성과 국방성이 별도의 정책을 추진했을 수도 있다. 즉 외무성은 소련과 비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서 소련을 견제하는 중에 관동군은 국방성의 지시에 따라 군사활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하산(장고봉)전투는 관동군의 대소련 군사작전을 위한 일종의 탐색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찌보면 일국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대전제에 동의를 강요받으면서도 소비에트 대중일반이 제국주의 사회에 대한 우월한 도덕성과 의무를 자부하면서 용인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1920년대 국가권력이 소비에트 반혁명세력에 취했던 '폭력'이 소비에트 권력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필수요건이었다면, 1930년대의 그것은 발달된 사회주의를 일국 소련에서 건설하겠다는 절대적 목표 속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소비에트 정권의 목표에 어긋나는 위기적 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일상의 수단'으로 폭력이 활용된 것이다. 따라서 대중일반에 대한 억압조치 및 테러 그리고 강제이주와 같은 폭력사례들은 국민들을 '추가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¹⁹⁾ 따라서 비민주적 결정이 만연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폭력의 사용조차 단지 국가 안보라는 지고의 목표만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목표를 위해서라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사용되었다.

소련의 억압적 국가관리 조치는 평상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었거나 전쟁 직전 혹은 전쟁 중인 모든 긴급 상황에서 빈번하게 취해졌다. 평상시 발생된 사회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집단적 이주조치는 국내 내부요인, 즉 사회내 갈등관계에 있는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이해관계가 주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과 같이 대외 국제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할 때에는 국내적 요인을 배경으로 국제적 환경이 더욱 크게 위기를 조성하였고 그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강제이주와 같은 불합리한 억압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1930-40년대 소련에서 발생한 대량 억압과 테러 그리고 강제이주라는 일련의 국가적 폭력은 이외로 엉뚱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1934년 12월 공산당 중앙위원이던 키로프가 암살되었는데, 한 청년의 단독범행으로 밝혀진 이 사건을 스탈린은 반대파 견제용으로 활용하였다. 키로프는 우익

19) Б. П. Курашвили, "Политическая доктрина Сталина"(스탈린의 정치독트린). История СССР (소련의 역사), N 5, 1989, с. 68 ; он же. Куда идет Россия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М.: Прометей, 1994), с. 160-162.

편향주의 세력(правые оппортунисты)을 경계하자는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므로 그를 암살한 세력은 곧 우파적 입장을 지닌 당내 반대파 및 세계전쟁의 가능성을 위협적으로 제기한 인사들이라는 논리였다. 1935년 1월 전러 공산당(불) 중앙위원회(ЦК ВКП(б))는 우익편향주의 세력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돌리면서,²⁰⁾ 이들이 마치도 적국인 "사회주의 진영(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лагерь)의 적대자들을 유인"할지 모른다고 숙청을 시작하였다.

대량숙청의 광풍은 1935년 5월 당중 교부라는 미명 아래 당내 불온분자를 걸러내는 재판으로 시작되었다. 당중을 교부하면서 당원임을 확인하는 작업은 당내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광산, 기업소, 철도 등에서 야당세력이나 불온분자가 간첩·파괴활동을 자행한다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1936년 8월 레닌그라드시 당서기였던 지노비예프와 15명의 지도자가 트로츠키 세력에게 파시스트와 협력했다는 혐의로 사형에 처하면서 불었다. 1936년 9월에는 서부시베리아 케메로프 광산에서 폭발사건이 발생하자 내부 불순세력의 준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내무인민위원장인 예조프가 소환되었다. 1937년 1월에는 일본의 첩자이자 비밀요원이라는 죄를 쓰고 무고한 당원들이 대량 처형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1937년 3월에는 전로공산당(불)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가 "트로츠키 주의자와 파괴분자(троцкистские двурушники)"들을 청산할 임무에 크게 강조하였다.²¹⁾ 그에 따라 당내 트로츠키주의자로 빼타코프(Г. Пятаков), 라텍(К. Радек), 소콜리니코프(Г. Сокольников) 등이 고소되었고, 군부에서 투하체프(М. Н. Тухачев) 장군과 기타 적군 군사령부를 법의 심판(судебная расправа)으로 사형선고를 받거나 비밀리에 총살당하였다. 그리고 1938년 3월에는 부하린과 리코프 역시 총살당하였다.

이로써 분명해진 하나의 사실은 1930년대 소련 사회주의 국가의 주요 임무가 혁명의 완수에서 국가 내부의 반역자와 파시즘 동맹세력에 유리한 간

첩 행위의 위협성을 근절시키는 데로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그 수단은 강압적 국민 관리조치, 즉 국가적 폭력에 있었다. 193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소련의 국가관리 체계는 전체주의적 성향을 띄어 갔다. 스탈린 체제는 권력과 국민 사이에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반대파 숙청을 통한 예방적 강압조치를 필수적 수단으로 삼았다.

스탈린 정부는 국내 내부 반대파 세력에 통제를 가하면서 국외 파시스트 세력의 움직임을 심분 활용하였다. 당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독점 형태가 전개되면서 자본이 국가권력과 결합되어 공공부문에서의 전횡이 커져만 갔다. 1936년 7월 스페인에서는 내전이 발생하였고, 일본이 중국에 공격을 가하면서 중일전쟁이 터졌다. 그리고 1936년 11월에는 일본과 독일이 반코민테른 협정에 서명하면서 공산주의 세계에 대한 블록을 견고히 해 나갔다.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소련 국내에서도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점차 격해져 갔다. 비록 '스탈린 헌법'이 채택되었지만 이는 세계혁명을 뒤로 미루고 일국 소련에서 우선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아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뿐이었다. 독점자본주의 국가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상황과 세계혁명을 주장하는 국내 반대파의 결합 가능성을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유럽지역에서 파시스트 세력이 준동하여 국제적 긴장을 조성했다면, 극동지역에서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팽창정책으로 인해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다. 일본이 공격적인 정책으로 중국영토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 나갈수록 소련은 일본의 공격에 대한 위협을 더 크게 느꼈다. 소련은 양보를 통해 현상을 유지하려 하였다. 1932-33년에 발생한 민생단(民生團)사건²²⁾에 대해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던 소련은 1935년 3월 1억 4천만엔

20) История ВКП(б), Краткий курс(역사 소교정) (М., 1950), с. 312-313.

21) Материалы февральско-мартовского пленума ЦК ВКП(б) 1937 г.(1937년 전로공산당(불) 중앙위원회 2-3월 간부회의 자료),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N 2. М. 1995. С. 22-26.

22) 민생단은 1932년 2월에 조직되어 간도 조선인의 자치를 표방한 친일단체이다. 일본은 중국의 압력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조선인 권익옹호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만주를 점령한 이후에는 오히려 조선인의 자치가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항일 유격대의 근거지가 될 것이라 믿어 1932년 10월 해산하였다. 그러나 1933년 초 중국공산당 동만지부가 자치를 주장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을 통한 스파이 침투를 경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

으로 동청철도를 매각한다는 특별협정을 일본과 맺었다. 이때 귀국한 소비에트 관료들과 노동자들은 내무인민위원회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 속에 두었다.

그러나 일본의 만주침략은 누그러지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1936년 6월 마침내 일본정부는 “제국방위방침(Директивы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Империи)”을 책정하여 소련과 미국을 제1순위 적국으로 선언했으며 독일과는 반공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련의 대일 현상유지 정책이 무위로 돌아갔음을 깨달은 소련은 극동정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Политбюро ЦК) 내에 극동위원회(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комиссия)라는 특별조직을 통해 극동지역의 정세안정을 찾는 방안연구를 전담시켰다. 이곳에 선 한인문제를 포함한 대일본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다루어졌다.

1937년 7월 노구교사건을 조장한 일본은 만주로 침략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이웃한 만주 지역에 적국 일본군이 진출한 것을 큰 위협으로 생각했지만 극동정세의 안정(status quo)을 유지하기 위해 유화적 조치의 일환으로 8월 21일 일본과 비밀 “불가침조약(Пакт о ненападении)”을 맺었다. 그러나 소련의 화해 노력은 일본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38년 6월 29일 하산을 공격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다.

(2) 중앙-지방 권력갈등에 연루된 한인사회

1937년 1월 당내 숙청의 광풍이 일 때 전로공산당(불) 극동지구 당위원회 제1서기(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Далькрай кома ВКП(б)) 라브렌찌예프가 연루되어

하였다. 이때 희생된 한인 유격대원은 500~2,000명 설이 나돌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자행되었다. 민생단 사건은 소련의 한인 강제이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제의 항일 독립운동 탄압책에 소련의 이해가 일치했음을 보여준다. 한홍구, 「극동 고려인의 강제이주와 간도의 민생단 사건」, 『러시아지역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2004. 9. 16. 블라디보스톡, pp. 202-204.

모스크바로 소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자리는 바레이키스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한인을 집단적으로 강제이주시킬 때 책임자였던 내무인민위원회 극동주 국장 류쉬코프의 증언에 의하면, 라브렌찌예프가 극동군 사령관 블류헤르 장군을 퇴출시키기 위해 극동지역 집행위원장 크루토프(Г. М. Крутов), 블류헤르의 정치부장 아론쉬탐(Л. Н. Аронштам) 그리고 극동주 국방위 부인민위원장 가마르니크(И. Гамарник)과 공모하여 스탈린에게 보고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간파한 블류헤르가 스탈린에게 자신을 겨누는 음모론을 사전에 보고해 차단했다는 것이다.²³⁾

문제는 라브렌찌예프가 소환, 구속된 이후인 1936년 1월 한인민족지구 포시에트 당위원회 제1서기(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парткома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айона Посыет)인 김 아파나시(Афанасий Ким)가 동시에 직위에서 해제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외국 첩보기관에 협조한 반당분자” 대열에 연루되어 결국, 숙청의 희생양이 되었다. 중앙 내부의 권력투쟁에 연루되어 한인 사회에 숙청의 불똥이 튼 것이다.

김 아파나시는 1934년에 개최된 제17차 당대회(XVII съезд ВКП(б))에 라브렌찌예프의 추천으로 대표사절로 참석하였다. 당대회에서 그는 극동변경주 대표자격으로 보고연설을 하면서 극동지역 현지 지도자들이 농업집산화 추진을 위한 기계트랙타보급소(МТС) 조직운동에 무성의하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성공사례를 홍보하여 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김의 후견자가 정치적 이유로 모스크바로 소환되게 되어 사형언도를 받은 이후 그 역시 과거 상해파 공산주의자였다고 비판되면서 정치적 희생을 당했다.²⁴⁾

당내 숙청과정에 과거 한인 빨치산 단원과 한인 공산당 내지 민족사회단

23) В. Ким,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посмертно. Эпелон 58. (죽음으로 회복된 명예. 호송열차 제58호), Ташкент, 1995. С. 17-22 ; G. S. Liushkov, The Army of the Far East(極東赤軍論). Kaizo(改造). N 9. 1939, pp. 148-149.

24) Гу Светлана, Ли Хен Гын, Корейцы,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1938, Кн. 3. (М. : Гриф и К., 2004), с. 62-63. 전 3권으로 구성된 책에는 소련 국가보위부 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한 등 기간에 숙청된 한인 2,500명의 명단과 약력이 소개되어 있다.

체 지도자들이 연루되었다. 1937년 6월 11일 전로공산당(불) 주당위원회 아무르부로의 회의에서는 전덕채(Чен Ток-Цай)가 반파시스트 단체 국민회 활동 속에서 까란드라리쉬빌리(Н. А. Каландраишвили) 지도하의 소비에트 군대를 지원하고 “이르쿠츠크 전선으로 인원을 파견키 위해 특별지대(участки)를 조성했던 한인 빨치산 희망자를 반대”한 일로 고소되었다.²⁵⁾ 1937년 8월 20일에는 러시아공산당 당원이었던 이상호(Ли Сан-Хо)를 출당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관계법령을 무시한 몇 명의 한인을 끌고 호스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상기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는 등 통제를 불완전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를 더욱 고소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일본인이 주도했던 상해파 반당 집단의 지도부에 참여했다. 그는 1920년 자유시에서 소비에트 권력에 맞서 대항한 무장봉기에 참여했다”²⁶⁾는 것이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들 한인들을 고소하기 위한 근거들은 하나도 없었지만, 비록 하찮은 혐의라 하더라도, 지방권력들의 의심을 샀을 경우에 그것은 죄 없는 한인주민들을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실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1937년 그 해 가을 블라디보스톡 시당위원회와 연해주 주당위원회 제1서기였던 따냐긴(П. И. Тянягин)이 직위에서 해제되었는데 그에게 취해진 죄목은 한인들, 특히 김 아파나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중앙권력에 반하여 존재하는 야당지도자들은 마치 트로츠키주의자들과 협조할 모든 종류의 음모가 꾸며진 것처럼 비판할 토대가 사전 준비되었던 것이다.²⁷⁾

극동지역에 번지기 시작한 당내 숙청작업은 언론을 통한 선전선동 작업으로 ‘극동의 외국간첩행위’에 대한 소탕으로 이어졌다. 1937년 중반 이후 지방에서 중앙으로 많은 편지들이나 공무보고서 그리고 호소문 등이 접수

25) 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хранения и изуч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러시아 현대사 문서보관연구소), 이하 РЦХИДНИ. Ф. 17. Оп. 21. Д. 5526. Л. 16.

26) РЦХИДНИ. Ф. 17. Оп. 21. Д. 5526. Л. 213.

27) J. Stephan, ““Cleansing” the Soviet Far East, 1937-1938”. Acta Slavica Iaponica. Tomax X. Hokkaido, 1992, pp. 46-49.

되었다. 그 중에는 지방권력기관, 특히 극동지역에서 올라온 것들이 많았다. “일본-트로츠키주의 간첩들이 저지르고 있는 파괴공작과 반혁명선동 그리고 해당행위 등이 전례 없이 증대되었다는 내용들이었다. 물론 당시에 일본과 소련은 첩보활동을 전례없이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1937년 4월 8일과 23일자 <프라우다>신문 기사는 각각 외국인 비밀 첩보활동에 대해²⁸⁾ 그리고 독일과 일본에 이익을 주는 외국첩보원에 대해²⁹⁾ 쓰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경고 신호나 다름없었다. 한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던 극동의 모든 지역들은 바로 정부가 대놓고 “일본 첩보국의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최적 활동지대”로 간주되었다. 일본첩보 당국에서 극동지역으로 한인출신과 중국인 출신의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³⁰⁾ “그 지역의 출신이라든가 거주인이라고 외부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은 특히 국방사업에 큰 중요성을 갖는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철도기관 등으로 자기 사람들을 잠입시키는데 특별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첩보활동이나 해악·파괴집단을 조성하려는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³¹⁾ <프라우다>지는 한인 강제이주가 있기 전야인 1937년 7월 29일에 “파시스트 첩보국의 파괴공작” 기사를 내보냈다. 이곳에선 극동지역 한인들을 겨냥하여 비난을

28) Виндт, Отто, “Германская тайная военная разведка(독일 비밀 군사첩보).” Правда, 1937. 4. 8.

29) И. Волюдин, “Иностранный шпионаж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소비에트 극동에서 외국의 첩보활동)”, Правда, 1937. 4. 23.

30) 러시아공산당(불) 극동지구위원회 기관지(печатный орган Далькрай кома ВКП(б))였던 “태평양공산주의자(Тихоокеанский коммунист)”지는 1924년 일본제국의 첩보활동에 자세히 언급하면서 “일본은 중국에서 “소시(соси)”를 첩보요원이나 선동요원으로 광범위하게 이용하면서 이들을* 이발사, 무기마약판매상, 전당포 소유자 등으로 위장하였다. “소시”란 소련 러시아국민의 활동가와 새로운 형식의 미국 강대비적들의 중간계층 그 무엇이다.” 이 잡지는 “중국에서 “로린(ронин)”으로 불리는 이들 “소시”가, 소문에 따르면, 주로 첩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들 무책임한 사람들은 모든 방식의 모험주의를 감행하는 준비가 항상 되어있으며 모종의 일본제국의 “흑백인조(черная сотня)(극우반혁명단체)이다”고 이 잡지는 적고 있다.(Тихоокеанский коммунист(태평양 공산주의자). N 1. Хабаровск, 1934. С. 62.)

31) И. Володин, Указ, Соч.

쏟아 내었다.

언론에 이런 비난의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첩보활동요원이나 내부 반대파 즉 트로츠키주의자(троцкисты), 부하린주의자(бухаринцы), 투하체프주의자(тухачевские оппозиционеры), 가마르니크주의자(гамарники), 야끼르주의자(якиры) 그리고 기타 반대파(прочие оппозиционеры)”들의 활동을 파헤친다”는 명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³²⁾

극동지역에서 의심스러운 세력을 제거하려는 작업은 내무인민위원회 극동지부(УНКВД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краю) 국장인 바리츠키가 주도하였지만 그 역시 류쉬코프로 대체되었다. 류쉬코프는 군부내 블류헤르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를 제거하고 국경지역의 한인을 이주시킬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임하였다. 그가 받은 지도요령은 바로 스탈린으로부터 직접 받은 훈령서에 다름 아니었다. 스탈린은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한인을 믿지 못하였고 일본인이 한인을 자신들의 첩자로 소련후방에 계속 파견하여 파괴공작을 일삼으며 극동지역의 마치 ‘제5열 지대’로 활동할 것이라고 보았다.³³⁾

4. 한인 강제이주 결정과 실행

(1) 한인 강제이주 추진과정

마침내 한인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한 정직 작업이 마무리된 결과 본격

32) Н. Рубин, и Я. Серебров, “О подры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фашистских разведок в СССР и задачах борьбы с нею(소련에서 파시스트 첩보원의 파괴활동과 그들과의 투쟁임무에 대하여).” Правда, 1937, 29, 07.

33) G. S. Liushkov, The Army of the Far East. Kaizo. N 9. 1939 : G. S. Liushkov, I Criticize Soviet Socialism. Gekkan Roshia. N 5. 1939 : “Жизнь и смерть комиссара Люшкова(류쉬코프의 삶과 죽음)”. Российское Приморье. N 26. 1993, 25, 07.

적인 실행이 이루어졌다.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중앙기관의 관리들은 한인을 강제이주시키기 위한 법령들을 준비하여 채택된 법령 중에는 소련 인민위원회(СНК СССР)와 전러 공산당(ВКП(б) СССР)의 공동 명의의 법령으로 1937년 8월 21일, “극비” 소집된 몰로토프와 스탈린이 서명한 “극동주 국경 한인주민 강제퇴거에 관해서(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из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였다.³⁴⁾ 이 법령은 바로 한인을 강제 이주시키기 위한 관련조치와 이주방식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곧이어 극동지역의 한인들을 강제이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들이 속속 결정되었다. 소련 인민위원회(СНК СССР)는 이제 단독법령으로 “까자흐공화국과 우즈베크공화국으로 이주되는 한인들과의 정산절차에 관하여(О порядке расчетов с переселяемыми в Казахскую и Узбекскую ССР корейцами : 1937년 9월 5일)”, “한인 이주에 관하여(О пере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 1937년 9월 8일)”, “극동변경주로부터의 한인이주 비용 예산표(О смете расходов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корейцев из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 1937년 9월 11일) 등등을 발표하였다.³⁵⁾

주민을 대량 이주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조치들이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되었다.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수에 대한 보고가 모스크바 중앙으로 올라 갔으며 강제이주 작전과 관련된 수행 비용으로 수용소를 건설 준비 비용으로 인민위원회 예비비에서 7천 500만 루블이 지불되었다.³⁶⁾

강제이주의 제1차 노도가 몰아친 것은 1937년 8월 21일 채택된 법령에 의해서였다. 우선적으로 바로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한인 주민집단이 대상이 되었다. 소련 정부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의 한인을 퇴거시켜

34)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х годах(백서 1. 1930년대 러시아한인의 강제이주에 대하여, 이하 백서 1), Кн. 1. М. 1992. С. 68-69.

3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이하 GARF). Ф. 5446. Оп. 1. Л. 497. Л. 29-33 : Белая книга (백서 1), с. 74-79.

36) GARF. Ф. 5446. Оп. 1. Д. 497. Л. 26. 강제이주를 위해 준비한 비용 중에서 2,500만 루블은 ‘철도수송을 위한 비용(оплат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으로 할당되었다.

국경지대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일본 첩보원들이 극동변경주 등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강제이주가 실시된 지역은 다음의 뻘시에트, 몰로토프, 그로제코보, 항카이, 하롤, 체르니고프, 스파스크, 슈마코보, 뻘스피셰프, 비긴, 바쨌스크, 하바로프스크, 수이푼, 끼로프, 깔리닌, 라조, 스바보드넨스크, 블라고비센스크, 땀보프까, 미하일로프, 아르하라, 스탈린노, 그리고 블류헤로보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수십명 단위의 한인들은 벌써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가옥을 버리고 남카자흐스탄주, 아랄해나 발카쉬호의 연안지역 그리고 우즈베크공화국으로 이주해 가야 했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현지 행정부 기관들은 한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조속히 실시하고 1937년까지는 마쳐야 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연해변경주 주내무인민위원회(Приморское УНКВД)나 변경주 당, 소비에트 권력기관 그 어느 쪽도 한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곧바로 이행하려 하지 않았다. 만일 한인들이 신속히 퇴거될 경우 가을걷이, 특히 쌀 수확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현지 관리들은 법령이 지시한 즉각적인 이주가 미뤄진 9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이송되기 시작하였다. 퇴거 기일이 19일 내지 22일이나 훨씬 지난 다음에야 한인들을 태운 수송열차는 국경지대(뻘시에트, 스파스크, 그로제코보, 항카이 등)를 출발하였다.³⁷⁾

한인 후송 총책임자 류쉬코프는 내무인민위원회 위원장 예조프가 내린 명령 이외에도 별도의 지시사항을 하달하였다. 그는 특별 조건의 직인(специальный условный штамп)을 추방되는 한인들의 여권에 찍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주민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없애려 하였다.³⁸⁾ 그리고 “1937년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한인) 추방에 따른 제반 조치를 완수하도록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특별지령을 내렸다.

소련 행정부가 내린 지시에 따라, 우선 이주될 한인들의 현황이 엄격한

37) Белая книга ...(백서 1), с. 66.

38) Белая книга ...(백서 1), с. 85-86.

계산 하에 파악되어 있었고, 이주 대상인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타지방으로의 이동이나 이탈을 금지시켰으며, 엄격한 규칙 하에서 첩보관계나 반소비에트 활동혐의가 있는 한인들에 대해서 조사작업을 실시하였다. 한인과 러시아 주민들이 무질서나 선동 혹은 퇴거지역으로의 이동에 있어서 비합법적 무질서 상태의 예방 등 제반 지원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³⁹⁾ 이주되어야 할 한인들은 수중에 자신들의 재산가 경제 농기구, 가축 등을 갖고 갈 수는 있었다. 그리고 두고 가는 재산이나 종자에 대해서는 대가 지불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해 놓았다.

- 1) 이주되는 한인 풀호즈원들의 재산이 남겨졌을 경우 1937년 1월 1일 기준 회계예산의 균형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 2) 풀호즈원이 가져간 재산은 1937년 1월을 기점으로한 실질 가치로 평가된다.
- 3) 수확을 거두지 못한 파종경지는 지구 집행위원회가 정한 그 해 해당작물의 평균수확량에 따라 그리고 식량예비수납소(хлебозакуп)의 기초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 4) 모든 한인 농가의 가축은 가축조달수납소(Заготскот)가 받아들이고 이주해 들어가는 지역에서 현물로 배상한다.
- 5) 지구 집행위원회는 법령과 규칙으로 정해진 전체가치에 따라 풀호즈원들이 갖고 있었던 전체 재산을 정해 그들이 이 산정된 액수를 가져가서 새로운 이주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풀호즈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 쓰도록 약정한다.
- 6) 은행에 당좌예금으로 예치된 풀호즈의 공동 예금액은 이주 지역 풀호즈의 당해 은행 지부로 송금된다.

39) 1937년 8월 21일 최초로 발표된 한인강제이주 법령 5조에는 “이주대상 한인들이 원할 경우 국외로 떠날 수 있거나 국경통과 규칙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여 한인들의 국외이동을 허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같은 법령의 제11조에 보면 국경수비 강화를 위해 병력을 3,000명 증가시킨다는 조치가 동시에 취해졌다. 그 결과 강제이주를 피해 국외도 이주하려는 주민들은 이적행위자로 간주되어 체포되었다. Белая книга ...(백서 1), с. 66. 한인주민이 2,500명이나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으로 망명한 류쉬코프의 증언이 있다.

- 7) 추방된 한인들의 확실한 채무차입금(задолженность)과 생산작업에 사용된 기계트랙터보급소(МТС)의 기계 사용료 등은 꼴호즈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물이나 자금으로 지불해 주거나 혹은 꼴호즈가 남겨둔 재산에 대해 가치평가를 할 때 이 채무부담금을 정산(путем зачета)하는 방식을 취한다.
- 8) 모든 꼴호즈와 개별경영농민(единоличники)의 부동산(недвижимое имущество) 역시 보험평가(по страховой оценке)에 따라 지불된다.
- 9) 꼴호즈원과 개별경영농민이 남겨둔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에게 나눠주거나 신용어음(аккредитив)으로 대신한다.
- 10) 자산 평가는 지구 삼인위원회가 임명한 위원회가 실시한다.
- 11) 남겨둔 가축에 대한 수납규칙에 대한 지시사항은 인민위원회 조달위원회(уполкомзаг СНК)과 식료품생산인민위원회의 가축조달수납소(Заготскот Наркомпищепрома)의 방침에 따른다.
- 12) 수확하지 못한 모든 파종 곡물 생산물은 소비조합(потребкооперация)이 곡물수매 규칙에 따라 수납하며, 여타의 생산물은 추가수매(дозаготовкa) 규칙에 따른다. 생산물수확의 경비를 공제하기 위해 지불된 비용은 지구집행위원회의 특별당좌예금으로 보관되며 지구집행위원회의 특별규정에 따라서만 지불된다. 수확하지 못한 모든 생산물에 대한 수납과 그 비용에 관한 지시사항은 인민위원회 조달위원회(уполкомзаг СНК)과 소비조합(потребкооперация)이 공동으로 하달한다.⁴⁰⁾

남겨둔 재산에 대한 비용의 지불은 러시아공산당(불) 극동지구위원회(Далькрай ком ВКП(б)) 서기인 바레이키스와 내무인민위원회 극동국(УНКВД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краю) 국장 류쉬코프가 이주지역의 현지 지도자들에게 선불로 이주민들에게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또 그리 실행하였다. 그러나, 미리 앞서 언급해 본다면, 이주민들은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 당연히 지

40) Пак Чон-Хе и Ли О. А., Книга памяти. Архивные списки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1937 году (회상의 책, 문서관소에서 발굴한 1937년 강제이주된 러시아한인 명단 : 이하 회상의 책), Часть, 1, (M. : АКР, 1993), с. 29-30.

불받아야 할 약속 금액에 대한 영수증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책임 관리들의 지불 약속은 극동지구 집행위원회(Далькрай исполком)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기관과의 지연과 떠넘김으로 시간을 허비한 채 전혀 지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은 하나였다. 한인 이주민들은 국가가 보상기로 한 비용을 전혀 받지 못했다.

우수리 주집행위원회 서기 로흐린(Рохлин)이 전로공산당(불) 극동지구 당위원회 서기 바레이키스에게 전한 보고에 의하면, “첫번째 이주 열차가 1937년 9월 9일 스비라기노 역을 출발해 완벽한 질서 속에 스바스크 지구의 크나리노로 향했다.⁴¹⁾ 그 후 우수리스크주에서는 1937년 9월 9일에서 23일까지 한인 이주민 가족, 전체 1만 1,807명이 과적 수용된 열차로 보내졌다.

그 뒤를 이어 하바로프스크주, 특히 바젬, 비킨, 라조, 깔리닌, 빠스뜨세프 지구나 국경지대에 속하는 미하일로프, 아브구스코프 그리고 루키야노프 농촌소비에트(сельсовет) 그리고 바로 하바롭스크시 등에서 한인에 대한 강제이주가 뒤따랐다.⁴²⁾ 이상의 모든 실질적인 작업을 조직하는 일은 주 “삼인위원회”가 담당했다. 이 구성원으로는 전로공산당(불) 주당위원회(обком ВКП(б)) 서기 얀베르그(Янберг)와 주집행위원회의 위원장 라민(Лямин) 그리고 국경수비대(погранотряд) 대장 이바노프(Иванов)가 포함되었다. 개인적으로도 지구와 농촌의 당기관 그리고 소비에트 행정기관의 지도자들이 임무를

41) 그러나 사실은 첫번째 열차가 떠난 날은 9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즉 10일 6시 5분에 떠났다. 이 사실은 극동 철도국 국장 드루키스(Н. Друкис)가 전로공산당(불) 극동지구위원회의 바레이키스, 블류헤르 그리고 류시코프 명의로 보낸 전보에서 밝혀졌다. 열차 지연의 이유는 내무인민위원회가 실시한 이주한인의 명단을 검토하는 작업을 이주민들을 열차에 다 태운 이후에야 끝냈기 때문이었다. (А. Кузин,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цы : Жизнь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극동지역의 한인 : 삶과 비극적 운명),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3), с. 121.). 각 차량 마다에는 20-30명이 태워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열차 차량 중에는 특별 “교사차량(учительский вагон)”을 두어 이들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Книга памяти и ... (회상의 책), с. 30.

42) 이 지역에서의 강제이주를 준비하는데는 모두 10여일이 소요되었다. 즉 1937년 9월 24일 제 2차 추방 대상에 속한 한인을 출발시킨 이후 10월 5일까지 이 “작전조치(мероприятия)”은 지속되었던 것이다. А. Кузин, Указ. соч., с. 121.

말아 수행하였다.

“제 1차(первая очередь)”로 한인을 출발시키는 데에는 그 준비여부에 크게 좌우되었다. 첫번째 열차가 1937년 9월 24일 출발하여 2,230명이 보내졌는데, 그 중 1,090명이 어린이들이었다. 하바로프스크 지구에서는 시립병원에서 치료 중인 2명의 한인과 러시아인에게 시집간 1명의 한인여성을 제외하고는 퇴거에 응하지 않은 “한인 가정과 개별적인 한인”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하바로프스크 중에서 2만 344명의 한인 4,533가구가 소거되었으며 그 중 4,856명이 하바로프스크시 주민이었다.⁴³⁾

아무르주(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에서도 역시 전체적인 계획 하에 1937년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강제 퇴거가 실시되었다. 미하일로프, 아르하린스크, 블라고비센스크, 스바보젠스크 그리고 팜보프 지구와 블라고비센스크 시로부터 한인들이 “청소(отчистка)”되었다.

제1차 작전의 결과, 예조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비밀 보고에 따르면, 극동 지역 국경지대의 한인 이주 작업은 1937년 9월 21일 일단락지어졌으며, “모든 한인들이 카자흐스탄 공화국(KCCP)으로 21,299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УзССР)으로 30,003명 등 전체 10,369가구(51,299명)가 추방되었다. 이들을 태운 차량은 현재 이동 중에 있다.⁴⁴⁾ 예조프는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1937년 9월 24일부터 국경지대의 한인들을 추가로 추방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열차 배정 상태에 의하면 극동지역에서 추가로 5,400가구 내지 24,000명의 한인들이 1937년 10월 3일까지는 추방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극동변경주의 국경지대에서 한인 총 7만 5천 내지 7만 8천명 혹은 애초에 계획했던 송출 숫자보다 1만 8천명이 더많은 한인이 추방될 것입니다.”⁴⁵⁾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 자치주(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에서도 한인들이 추방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37년 8월 21일 최초로 내려진

43) ПАХК(하바로프스크 문서보관소). Ф. 399. Оп. 1. Д. 306. Л. 118.

44) Белая книга ... (백서 1), с. 111.

45) Там же.

한인추방 명령에 언급된 곳이 아니었다. 이 결정은 1937년 9월 21일 열린 유대인 자치주 전로공산당(불) 극동주위원회 뷰로(Бюро Далькрай кома ВКП (6))의 회의에서 이 곳에 참석한 위원 바레이키스, 블루헤르, 리흐코느라보프, 류시코프 그리고 하한안이 내렸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지배적으로 논의되었다. 즉 현지 당 지도자들은 비국경지대인 하바로프스크 북쪽, 즉 유대인 자치주의 스미도비체스크 지구와 폼소몰스크-나-아무르 시에서도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것이다.⁴⁶⁾

이 회의에서 결정된 또다른 사항은 전로공산당(불) 극동변경주 주위원회 극동변경주 집행위원회 그리고 내무인민위원회 극동국의 전권대표들로 구성된 “삼인위원회” 구성을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러시아공산당(불) 극동변경주 주위원회는 한인 이주민들이 남겨둔 재산(학교건물, 가옥 등)을 처분하는데 적극 달려들었다.⁴⁷⁾

극동변경주 공산당 위원회는 가옥 분배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뽀시예트와 바라바셰프 지구와 같은 국경지대의 지구 중심구역을 접수, 보존하기 위한 특별 필수조치들을 채택하였다. 한인학교가 있었던 건물들은 군 수비대와 국경수비대의 규정에 따라 러시아학교 밑으로 편입되었다.⁴⁸⁾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한인 강제이주가 실시된 영역이 당초 명령 내려진 지역보다 더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 영역은 연해주의 국경지대를 훨씬 넘어서는 지역이었다. 극동지역에서 전체적으로, 1937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5개의 열차에 한인 전체 약 1만 5,620가구(총 7만 5,294명)이 태워져 송출되었다.⁴⁹⁾ 아마도 추측컨데, 제 1차 추방작업을 통해 대체로 의심을

46) РЦХИДНИ. Ф. 17. Оп. 21. Д. 5441. Л. 70.

47) Там же. Л. 87.

48) Там же. Л. 80.

49) 다른 자료에 따르면, 1937년 9월경 총 7만 4500명의 한인이 스파스크, 뽀시예트, 그로제코보, 보로쉬로프, 호멜리츠키야 역(ст. Хмельницкая) 그리고 유대인 자치주 등에서 강제이주 되었다 한다. Н. Ф. Бугай, “Выселение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극동지역에서 소비에트 한인 추방)”.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N 5. М. 1994, с. 143.

받을 수 있는 “불순분자(неблагонадежность)”들은 다 걸려들었을 것이다. 강제이주는 무엇보다도 내무인민위원회 관리가 지적하듯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극동지역의 국경 지대를 (칩자로 의심받는) 한인들로부터 보호하고 조국을 지킨다는 명분에 따라, 즉 변경주 지대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채찍이 가해진 셈이다.⁵⁰⁾

극동변경주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잔여 한인들을 모두 추방시키는 제2차 집단이주 물결은 1937년 9월 28일 소련 인민위원회 법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НК СССР) “극동변경주 영역에서 한인을 추방시키는 데 관하여(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с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⁵¹⁾가 발표된 이후에 실시되었다. 이 문서의 중요성에 비쳐 이 곳에 전문 인용한다.

극비(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특별 서류철(Особая папка)))

소련 인민위원회 법령 N 1647-377 cc 1937년 9월 28일. 모스크바, 크레믈린. 극동변경주 영역에서 한인을 추방하는 데 관하여 소련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법제정을 한다 :

1. 극동변경주 영역의 모든 잔여 한인들을 추방한다. 추방령은 1937년 10월 한달 동안에 전개하며, 제 1차 추방 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2. 제 1차 추방했던 곳과 마찬가지로 : 카자흐스탄 공화국(악쭈빈스크, 서-카자흐스탄, 카라간다, 남-카자흐스탄주 그리고 구리예프 관구)에 12,000 가구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철도 북쪽지역)에 9,000 가구를 배치한다.
3. 극동변경주 집행위원회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인민위원회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인민위원회는 1937년 9월 11일 소련 인민위원회가 승인 제정한 법령 N 1571-356 cc에 따라 인민위원회 예비준비금(резервный фонд Совнаркома Союза ССР)에서 21,000명의 추가 인원 이주에 대한 비용과 전자재 비용을 우즈베크과 카자흐 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지출한다.
4. 수리인민위원회(Наркомвод)와 교통통신인민위원회(НКПС)는 극동변경주 집

행위원회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인민위원회 그리고 해상, 수상, 철도 수송 수단을 이주민 이송을 위해 사용케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

5. 기계설비인민위원회(Наркомиссар Машиностроения)는 즉각,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내무인민위원회의 이주민 이송에 필요한 물품, 즉 화물 자동차(1톤과 3톤) - 공화국별 60대, 경자동차 M1 - 공화국별 3대, 트랙터 - 공화국별 45대를 지급토록 한다.
6. 국방인민위원회 위원장(Наркомат Обороны)은 60개의 이동식당차 설비를 지급토록 한다.

소련 인민위원회 위원장 - 몰로토프(В. Молотов)

소련 인민위원회 관리국장 - 페트루니체프(Н. Петруничев)

새로 발령된 한인 추방에 관한 법령은 국경지대 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이주민 숫자를 더 확대한 결과 그 지역의 모든 한인들은 예외없이 거의 떠나야 했다. 한인에 대한 추방 작업이 단지 국경지대에 한정되지 않고 “후방지역”인 연해주의 국경지대(블라디보스톡, 전 연해주 지역, 사할린 일부 지역, 니콜라예프스크주)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인 강제이주의 대상 영역이 확대되어 조치가 취해진 결과는 예조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 한인이 잔류하는 것(혹은 잔류하는 한인 - 필자)”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해양기지나 요새지구 근처 그리고 그 인근지역(블라디보스톡, 쉬코프보, 수찬, 올가, 소비에트항 (Совгавань))에 잔류한 한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일본의 첩자요원들이다”라고 보고서는 썼다.⁵²⁾ 그와 동시에 예조프는 스탈린에게 이주 작전을 완수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주될 대상 지역은 악쭈빈, 서-카자흐스탄, 카라간다, 남-카자흐스탄 주들과 구리예프 관구 등이라고 상세

50) ГАРФ. Ф. 5446. Оп. 1. Д. 497. Л. 29.

51) ГАРФ. Ф. 5446. Оп. 57 : Белая книга ... (백서 1), с. 80.

52) Белая книга ... (백서 1), с. 111.

히 적어보냈다.

1937년 10월 7일 소련 인민위원회는 새로운 법령 “극동변경주로부터 한인을 제 2차로 이주시킬 비용예산에 관해서(О смете расходов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второй очереди корейцев из ДВК)”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2만 1천 가구의 강제이주된 한인들의 기초 생활을 위해 정부는 예비준비금에서 1억 2,600만 루블, 그 중 극동변경주에는 6,300만 루블, 우즈베키스탄에는 2,700만 루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는 3,600만 루블이 책정되어 지불되었다.⁵³⁾ 이주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일당 5루블이 책정되었다. 그렇게 하여 한인을 이주시키기 위해 사용해야할 국가의 전체 비용은 대략 1억 9,000만 루블에 이르렀다.

2번째 순서로 추진된 한인 퇴거작업은 1937년 10월에 끝내도록 계획되었다. 첫 번째 퇴거작업에서 축적된 신속한 처리규칙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었다. 문서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는 이주작전이 거의 자동적인 규칙 속에 진행되었다. 연해변경주 권력기관이 세운 계획에 따르면 1937년 10월 3일은 세 번째 순서의 한인 송출이 예정되어 블라디보스톡과 프룬제, 보로쉬로프, 레닌, 삐르보리첸스크, 슈코토포, 부조노프, 올가, 켈르네이스크, 수찬, 아르썬 지구와 연해주 소비에트항 등에서 실시되었다.⁵⁴⁾

한인 추방작업은 1937년 10월 14일까지 강제적 규율 속에서 계속되었다. 그 결과, 극동변경주 내무인민위원회 국경 및 내부 통수부대(войска КГБВ НКВД ДВК) 여단장 소콜로프(комбриг Соколов)의 특별 보고에 따르면 “터무니 없는 시설과 전혀 청소되지 않은 열차” 31대가 그대로 떠났다. 총 9,284가구(44,977명) 중에서 6,551가구(31,737명)가 카자흐스탄으로, 2,733가구(13,240명)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한인을 우수리주나 유대인자치주에서 추방시켰다. 사할린주에서도 역시 한인은 블라디보스톡으로

53) ГАРФ. Ф. 5446. Оп. 1. Д. 497. Л. 30.

54) ЦГАДВ(극동중앙문서보관소). Ф. 2413. Оп. 2. Д. 804. Л. 205-209; А. Кузин, Указ. Соч., с. 128.

견내졌다.⁵⁵⁾

한인을 추방시킨 작전의 결과는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위원장 예조프(Н. И. Ежов)가 작성하였으며 “완전비밀(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이란 인장 하에 쓴 서한으로 소련 인민위원회 위원장 몰로토프(В. М. Молотов)에게 보내졌다. 예조프의 보고에 따르면 “1937년 10월 25일 극동변경주에서 한인을 추방하는 일이 마무리되었다. 앞서 통지했듯이, 총 124개의 차량에 3만 6,442가구 17만 1,781명의 한인이 소거되었다. 극동변경주(ДВК), 캄차트카, 오흐츠크에 남아있는 특별이주민(спецпереселенцы(필자 강조))은 모두 700명 정도인데, 당해 년도 11월 1일, 준비된 차량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한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1만 6,272 가구 7만 6,525명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에는 2만 170가구 9만 5,256명이 이주되었다. 7개의 열차 차량이 한인들을 새로 이주해야 할 곳으로 날랐다. 현재 이동 중에 있는 한인 이송 차량은 48대가 남아있다.

교통통신인민위원회(НКПС)는 이주민 이송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다. 몇몇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송차량들이 예정대로 운송되었다. 몇몇의 비합리적인 사건이 이주민을 하차시키는 현장에서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는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인민위원회가 항시 이주민 수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위원장 예조프가 언급하듯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의 이주민 배치와 정착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의 상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었고 제일 나중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완전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염려가 우려되었다.”⁵⁶⁾

이주민 정착을 위한 업무에는 국가계획위원회(Госплан)와 각 공화국 토지인민위원회(Союзные наркомзем)가 토지정착, 관개, 기계트랙터보급소 조직을 맡았고 계몽인민위원회(наркомпрос)는 한인 학교망의 조직을 그리고 국내상

55) Белая книга ... (백서 1), с. 136.

56) Белая книга ... (백서 1), с. 114-115.

업 인민위원회(наркомвнуторг)는 정착 지구 내의 상업망을 조직하는 사업을 맡아서 수행토록 하였다.

1937년 10월 블라디보스톡과 우폴리나야, 크라스끼노 마을, 하바로프스크 변경주, 오호츠크 그리고 캄차트카 등지에서 잔류된 한인들이 마저 추방되었다. 그 후 추방된 지역은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이 떨어지지 않은 채, 부랴트-몽골 자치주(Бурят-Монгольская АССР)와 치타주(Читинская область) 등을 포함하여 점차 확대되었다.

한인 강제 이주의 광풍이 일단락된 이후인 1938년 5월 15일 치타주(Читинская область) 내부인민위원회(Управление НКВД)은 소련 인민위원회 법령을 확대 해석한 후 지방 권력기관에게 극동의 전 지역으로부터 한인을 추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 지시사항은 비밀지령(в секретной директиве)의 형식으로 확정지워졌다. 자바이칼 지역(Забайкалье)의 한인 끝호즈나 농촌 경영 아르젤 등 역시 일본 첩보기관의 근거지가 될 것으로 판단한 내무부 자바이칼국도 불법으로 소련에 입국한 한인 정치망명가나 도주자 그리고 “밀고받은” 한인들 모두를 체포하였다. 게다가 군부대 가까이 거주하거나 군부대의 하청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한인에게도 위의 지시사항은 이행되어 체포영장이 발급되었다.⁵⁷⁾

위와 같이 체포된 한인들 역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그리고 일부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과 러시아의 스탈린그라드주의 아스트라한 관구(Астраханский округ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등으로 송출되었다. 오랜 시일 동안 극동변경주에서 잔류한인들을 “청소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중국인이나 기타 다른 민족의 “불온분자”들 역시 동시에 추방되었다.

(2) 강제이주 후속조치 및 후유증

갑자기 내려진 집단이주 조치에 놀란 한인들은 망연자실해 있을 수만은

57) Забайкальский рабочий (자바이칼 노동자), Чита, 1989. 10. 5.

없었다. 말할것도없이 한인측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 류쉬코프가 예조프에게 보낸 보고에 의하면 1937년 9월 2일 레이넥(Рей нех)이란 섬에서 “제9의 파도(Девятый вал)”라는 어업조합의 한인공산주의자들과 노동일꾼들이 특별 대회를 갖고 한인 추방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때 어느 한 발언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번 회의에서는 한인 추방을 평가하는데 있어, 금번 이주조치는 헌법(Сталинская Конституция)에 위배되며 당의 민족정책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의 선동적 발언이 있었다”⁵⁸⁾고 지적하였다. 당연하게도 볼셰비키 당의 민족정책에 불만을 토로한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하여 꼭 체포하라는 긴급조치가 취해졌다. 한인들은 이미 일본 착취자들로부터 참혹한 교훈을 거뒀기에 소비에트 권력기관과의 싸움이 너무나 무의미하다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당국의 조치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소비에트 정부는 절차상으로는 이주 대상 주민이 간소한 절차를 거쳐 국경을 넘어 국외로 나갈 수도 있게 허용하기는 했다. 다시 말해 이주민이 원한다면 국외 출국도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 내무인민위원회가 취한 조치들은 한인들이 벌일지도 모르는 무질서와 무모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성격의 세부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국외로의 이주 허용은 거의 있을 수 없었다. 비상 “삼인위원회”(чрезвычайная тройка)의 지시에 따라 이주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불법집단에 가담한 죄(за участие в нелегальных группах)”로 1만 1천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8천명의 중국인, 600명의 폴란드인 그리고 수백명의 독일인, 라트비아인, 리투아니아인 그리고 수천명의 하르빈인(백군 망명객들 중 귀국한 자들을 그렇게 부름)이었는데 2,500명의 한인도 포함되었다.⁵⁹⁾

이같은 정보는 1939년 류쉬코프가 일본에서 폭로한 것으로 소비에트 한인을 모두 자신의 국민으로 여긴 일본에게는 대소 항의의 논쟁거리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반면에 소련 지도부는 한인을 강제이주시킴으로써 일본의

58) Белая книга ... (백서 1), с. 95, 129-134.

59) G. S. Liushkov, I criticize Soviet socialism : Союз(동맹). М. 1990, 03, 10, с. 9.

침보활동에 유용한 한인과 한인사회가 지닌 은신처를 앗아가긴 했지만 동아시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잠재적 범죄자(потенциальные преступники : 즉 한인 반일 애국주의자)”들만을 소탕한 셈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자기 국민에 대한 강제이주 조치에 항의성명을 냈지만, 소비에트 외교부의 공식적인 응답에 “만족”하고 만 것이다. 결국 한인을 강제이주시키므로써 소련은, 비록 일시적인 일이지만, 일본에게서 동아시아의 안정을 보장받았다. 소련과 일본의 입장에서 한인의 고통이란 단지 흥정대상일 뿐이었다.

소련 정부는 한인을 극동지역에서 추방함으로써 그 지역 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입게 하였다. 한인들이 소거된 지역의 사회상태를 정상화시켜야 할 긴급조치들이 신속히 실행되어야 했으며 텅빈 꼴호즈를 새로운 노동일손들로 충원해야 했다. 지방 정부는 새로운 임무들로서 현저히 부족해진 노동일손을 내무인민위원회 극동국(Управление НКВД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краю) 기관 내부에 이주과(Переселенческий отдел)가 생겨 바로 노동력 해결을 위한 이주 사업을 담당했다. 이 부서는 1933년 8월 15일에 해산되었던 전소이주과(Всесоюзный переселенческий отдел при СНК СССР)의 하위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소련정부는 극동지역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자금을 투여하였고 새로 이주해 들어오는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하여 건설자재가 공급되었다. 소련 인민위원회는 새로이 제정한 법규에 근거하여 유입이주민, 꼴호즈원들은, 극동변경주(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й)와 북부지역(районы Север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의 경우, 농촌경영을 위한 각종 세금과 소득세, 수확곡물세, 보험료 그리고 국가수납용 쌀, 산림자원 그리고 각종 곡물들을 입주 이후 10년간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황무지 개척에 대한 자발적인 개척 이주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정한 규모의 면세제도를 도입하였다.⁶⁰⁾

1938년 2월 극동 변경주 집행위원회(Далькрай исполком)에게 제공될 한인 이주에 따른 최종 비용분이 회귀비용(возвратные суммы)과 더불어 확정되었

60) ГАРФ. Ф. 9479. Оп. 1. Д. 37. Л. 18.

다. 그리고 소련 인민위원회 예비비(резервный фонд СНК СССР)에서 1억 1,287만 9천 루블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한인 주민이 소거된 텅빈 지역에 새로운 주민들로 채우는 문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였다.⁶¹⁾

5. 마무리

한인을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내륙으로 집단이주시킨 지가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증언과 사료가 등장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 실체와 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학계에서는 강제이주가 무엇이며 왜 소련에서 대규모로 발생되었는지를 발생 동기와 유형별로 분석해 보지는 못했다. 더우기 소수민족 한인이 대상이 된 이유를 제대로 평가하진 않았다.

본고는 강제이주를 국가관리 수단으로 보고 비민주적, 권위적 국가체제 속에서는 그 체제가 지닌 이념과 성격과는 무관하게 조건이 성립된다면 자행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주의 사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그 빈번함과 규모로 인해 역사적 단죄를 받고 있다.

강제이주가 발생하는 동기를 원인으로 보면, 1) 점령지에 대한 통제력 강화, 2) 전쟁 혹은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 3) 종족집단간 갈등과 긴장 해소, 4) 종교적 믿음과 차이에서 오는 갈등 등으로 구분된다.

소련에서 실행된 강제이주는 대체로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면서도 소련 강제이주는, 특정 민족집단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그 규모와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에트 민족정책의 폭력성과 비극성을 잘 말해준다. 소련 강제이주는 대상

61) Н. Ф. Бугай, "Вы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146.

이 된 주민 내지 민족집단이 지닌 사회적 지위, 즉 주도(명의, 지배) 민족이거나 비주도(비명의, 피지배)민족이거나하는 무관하게 그리고 토착민족이건 도래민족이건 그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 조치를 취함에 있어 동기를 유발한 민족은 해당 구성원만이 아닌 민족 전체가 예방적 조치나 처벌적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소련 한인이 1937년 8월 극동지역에서 강제이주된 배경에는 국경안보를 위해서는 주민안위를 부차적인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소비에트 국가의 국내의 환경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미 스탈린 체제는 국내 반대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억압과 테러 그리고 강제이주와 같은 '국가적 폭력'을 일상적으로 사용해 온 비민주적 권위주의 국가였고, 그러한 때에 소련 서부에서는 파시스트 세력과의 그리고 극동지역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와의 국제긴장이 고조되었다. 소련 정치 지도부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위기를 대처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극단적 강제이주라는 강수로 해소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한 결정을 내린 정치 상층부의 권력투쟁과 국내외 조건과의 연계 그리고 그에 연루된 한인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본고는 강조되었다. 특히 극동지역의 경우, 일본이 만주로 이미 침략해 들어온 상태이고 일본으로부터 첩보활동이 거세지고 있을 때,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극단조치로 한인사회를 국경에서 격리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인강제이주는 세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당과 정부가 공동 법령을 제정하여 극동지역 국경지역의 한인을 내륙으로 이주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당의 참여없이 정부가 독자적인 법령을 제정하여 국경 이외의 지역일지라도 모든 한인을 이주시켰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의 별도 법령이 없이도 우수리주, 유태인자치주 그리고 사할린주에서 독자적으로 잔류 한인을 이주시켰다.

강제이주 결과 한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정도로 기반이 파괴되었다. 반면에 러시아정부는 황폐해진 소거지역의 농장을 가꿀

노동일손으로 까자크 농민을 동원하였지만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없었다. 오히려 계산할 수 없는 국민적 불신과 소련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붕괴 이후 지속된 명예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07. 5. 21, 심사완료일 : 2007. 8. 10)

주제어 : 강제이주, 스탈린체제, 국가관리 수단, 국경안보, 국가적 폭력

<ABSTRACT>

The Crisis of Soviet State power and the Deportation of the Koreans in 1930's

Sim, Heon-yong

In this paper, the deportation was used as a measure of the national management, if the condition was established, the deportation was executed without relations with ideology and characteristics in the non-democratic or authoritarian national systems.

The motivation of the deportation in fields of reasons are as follows. 1) to enhance the control to the occupation area, 2) to person the threaten war or actual war, 3) to reduce conflict and tension among tribes, 4) conflict bring from religious belief and its differences. The examples of executing deportation in the Soviet are the mixed cases from the second and the third one in the above mentioned were not executed as policies in order to erase from the specific tribes, but the policies were tragedy of its sizes and frequencies, furthermore the policies, were violence of the Soviet's nationalities policies causing its critical casualties.

In crisis of pre-war and post-war, the Soviet Government was executed deportation to the tribes in order to prevent from becoming the opposing forces which were betrayed their motherland and in order to punish the tribes which were supported the enemy country during the war. But the Soviet Government showed that only member from causing the removal by deportation were not punished, all the people of the nationalities were punished. People with the measure of deportation from the Soviet or some nationalities were damaged

without any relation of its social status which were the ruled (called as leading) tribes or unrulred (called following) nationalities, and native or incoming nationalities.

In the background of removing the Soviet Koreans in the Far East Area in August 1937, people's security for the international boundaries securing, regarded as a secondary but inter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were became major factors. Already the Stalin's system commonly used 'national violence' such as oppression, terrorism and deportation in order to contain his opposing parties. In the mean time, the international tension between the Fascist and Japanese Militarism in the west, south and east boundaries were encountered. The Soviet Political Leadership encountered the national crisis, secretly agreed the anti-invasion Treaties with Germany and Japan, and also prepared the war with a measure such as the deportation.

This paper is to show minor tribes in the Far East of the Soviet and the leaders of Koreans living in that area were not freely lived from the power game of the Soviet's Political Leadership. In those situations the national violence became a routine issue. A group communicated with the opposing forces which could caused the war through the intelligence activities, were encountered the indifferencies oppression such as purges and the removal by regal force which were called the *Trotskyism*.

The deportation of the Koreans were executed three times. The first case was to the Koreans living along the boundaries of the Far East Area where indicated by the Joint Party-Government's Law. The second case was for the all Koreans living in that area except the Far East Area indicated by the Government Law. The third case was specially executed for the residing Koreans living in the *Usuri* State, the Jewish Autonomy *Oblasti* indicated by the Local Government's Directives without the Soviet Federal Law.

As the result of the deportation, the Koreans had experience that their community foundation were destructed to the crisis of losing their national identity. In the other hand, the Soviet Government could not reactivated local

economy notwithstanding mobilization of *Cosack's* peasants in order to use as labors who would manage to the state farm in the isolated and devastated areas. Adversely, the Soviet Government executed the people's unbelief which was not calculated, and could have payed the costs for recovering of their continuous honor in the course of maintaining the Soviet and after the separation from the Soviet. Finally those policies left tragedy behind the historical examples that the political leadership could executed the compulsory removal by the non-democratic or authoritarian government as one of measures in order to easily solve the above mentioned issues after maturing the environment.

Key Words : Deportation, Stalin's Control System, National Management,
Boundaries' Security, National Violence